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경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**2045** 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7.

발 의 자 : 박경흠, 안영호, 문희성

김태욱, 홍영진, 강혜순

### 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(안 제2조제2항, 별표)

- 2023년: 2,424,300원

- 2024년~2026년: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

# 3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제4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

4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2. 12. 6. ~ 12. 13.(8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월2,390,830원"을 "별표에 따른 금액"으로 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]

#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2조제2항 관련)

연도별	월정수당
2023년	월 2,424,300원
2024년	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
2025년	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
2026년	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(현행과
표에 따
'항 관련)
만큼 합산 반영
만큼 합산 반영
만큼 합산 반영

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증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
 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워 미만인 경우

## 2. 미첨부 사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」가 개정 되더라도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함

# 3. 작성자

○ 소 속: 의회사무국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

○ 이 름: 박 미 숙

○ 연락처: 290-4221